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37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구관희

변론 종결 2021. 5. 12.

판결 선고 2021. 6.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20.1. 9. 접수 제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C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각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합계 943,742,2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보증사고 발생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①	2017. 8. 30.	112,200,000	132,000,000	기업은행	2020. 1. 2.	2020. 4. 29.	113,702,238
②	2017. 8. 30.	255,000,000	300,000,000	기업은행	2020. 1. 2.	2020. 4. 29.	259,200,475
③	2019. 4. 23.	368,900,000	434,000,000	D은행	2019. 12. 5.	2020. 3. 17.	309,240,203
④	2019. 5. 14.	258,400,000	304,000,000	E은행	2019. 12. 6.	2020. 3. 19.	261,599,353
합계		994,500,000	1,170,000,000				943,742,269

나. 원고는 C와 B 등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521,669원 중 471,260,835원 및 그 중 153,523,724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130,799,677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186,216,987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9. 7. B에게 송달되어 2020. 9. 22.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6151호, 이하 '이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B는 2020. 1. 7. 자신의 동생 F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20. 1. 9.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5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기업은행에 대한 217,054,000원, D은행에 대한 44,797,000원, E은행에 대한 45,465,000원, G카드에 대한 770만 원, H에 대한 1,743,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 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C를 대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B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F는 2019. 2. 25. C 및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와 F가 변제기를 2019. 12. 31.로 정하여 C에 3억 원을 대여하고 B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3. 8.부터 2019. 4. 24.까지 합계 1억 2,700만 원을 C에 대여하고, F는 2019. 4. 4.부터 2019. 10. 21.까지 합계 1억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피고의 위 대여금액 1억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피고와 F가 2020. 1. 7.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9.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된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9. 2.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일부는 체결되지 않았고 신용보증사고는 모두 발생하지 않았으며 C의 재정적 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1. 7.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1억 2,700만 원은 2019. 2. 25. 이후에 피고가 C에 대여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B의 담보제공은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써 구체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을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르게 2019.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법률행위가 2019. 2. 25.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